



노중선

통일자료실 대표

남북 정상회담과 민족통일문제

2000년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발표는 민족구성원 누구에게나 일정한 기대와 가슴 실리는 흥분을 갖게 한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족통일을 향한 어떤 획기적인 줄로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의 자주와 나라의 평화와 보장하는 구체적인 실천조항들을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가능성보다는 회의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리고 통일운동진영에서 현실적으로 한총련이나 범민련 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측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의해 낼 수 있겠는가? 설혹 어떤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명확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코 지나친 비판판단은 아닌 듯 싶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의 접촉이나 합의 자체만으로도 통일에의 기대감에 부풀어 감격했었지만, 그것이 모두 허망한 환상이었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와 남북간 합의의 유형

우선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대화의 형식과 내용들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유

형을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공동성명이나 어떤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발표와 같은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을 통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천 조항들을 합의하였지만, 그 합의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될 당시 민족구성원 모두는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것 같은 감격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향한 기대가 컸지만, 발표 바로 다음날 국무총리로부터 "환상은 금물이다", "유엔은 의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상 합의 무용론을 들어야 했다. 1991년 12월 남북합의서가 발표되던 날도 역시 크게 기대했었지만 정부는 국회비준 절차도 생략하여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1998년 7월에는 법원에서조차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단국의 불이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잃었다"고 판결한 상태다. 다만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것과 경우에 따라 '조국통일 3대 원칙 확인'이라는 수사적 기록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둘째, 이산가족의 만남이나 경제협력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

그 동안 80년대에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공연'이 이루어졌고, 90년대에는 '통일음악회 교환개최', '남북통일축구대회의 교환 개최', '남북여성 심포지움 교환 개최'가 심사되었으며,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그 같은 만남이나 교류들이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도록 합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만남이나 관광, 그리고 경제교류들이 민족화해 및 단합 문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채 그저 장사와 관광 그리고 협육의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민족의 통일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일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셋째, 민족화해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근원적 실천 문제들을 합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대화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 등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무력감축이나 그 어떤 본질적인 과제를 실천한 사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민족화해와 단결,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군축 평화선언,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남북공조 등 커다란 문제를 다루고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식적 분류대로라면 이번에는 민족화해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합의하고 실천해 보아야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는 남북의 정상이나도 평화근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합의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까지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남북간에 군사문제에 관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불응하면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해 없이는 군사문제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바로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적 비극이고 또 통일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남북대화와 남북간의 입장차이

그 동안 단속적으로나마 진행되어온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했던 까닭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입장의 차이가 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남측은 1970년대 초 처음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제기한 이후, 줄곧 변함이 없었고, 80년대부터는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북측은 남측이 주장하는 인적·물적 교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치·군사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 초 CNN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를 만난다면 ① 남북간에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② 남한이 북한 경제를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③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자는 것임을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월말 박제규 통일원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자본과 기술,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베를린 선언에서도 김대통령은 ①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②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③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한다. ④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관찰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당국간의 경험,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평화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해온 북측은, 1999년 2월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남측이 ① 외세의의 공조파기와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 국가보안법 철폐, ③ 남한내 법민권, 한총련 등의 통일운동과 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금년 초 주중북측대사(주창준)은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① 국가보안법의 철폐, ② 국가정보원 해체, ③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방북 이탈리아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북측은 남북대화 재개에는 동의하지만 ① 국가보안법 철폐, ② 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북측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남북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선행 조건들에 대해 남측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측이 외세의존의 반북·반통일 자세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와 연공연복으로 통일정착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남측의 ‘평화적 분단관리’와 북측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남북대화와 관련한 남북간의 입장은 최근에도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을 위한 실천적 합의

여기서 민족통일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당위’와 남북당국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산가족 및 경제교류 문제**이다. 남측은 남북대화 시작 이래로 이산가족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지금 남과 북이 다함께 지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산가족 문제나 경제교류와 같은 당면한 현

안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 공동선언이나 어떤 합의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적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이산가족의 만남과 경제교류가 실현된다면 8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선별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같은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대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민족화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이다. 지금 남과 북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서로가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북측은 모든 남북대화 과정에서 선행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데다가 남측으로서는 대화단절의 냉전시대에나 적용했던 국가보안법을 각종 남북교류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마당에서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인권위원회조차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도 있는 만큼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폐지가 가능한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면 협의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결관계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도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내용의 합의가 필요하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남북간의 소극적 관계개선의 선언이 아니라 적대관계의 해소방안이나 민족공조 방안과 같은 실천 가능한 큰 틀을 합의하여 참으로 민족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